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688
----------	------

2020. 9. 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7. 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2항)
-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2019) 결과, 총 96개 조항에(조례 57개, 규칙 5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해당 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붙임1),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I 차별 및 인권침해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III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 침해 (제한) 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u>문화권 제약</u>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u>반환권 제약</u> (공공시설 이용 시 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u>구제권 제약</u>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 이용료 징수만 규정되어 있고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반환권 제약 소지가 있는 조항에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전시관 이용 제한¹⁾ 대상인 ‘술에 취한 사람 등’을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전시관의 이용 제한이 일반 시민의 문화권 제

1) '19.3. 전시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시관은 무료 이용되고 있고, 퇴관자나 이용제한자는 없음

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 보장 및 권리 구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전시관 뿐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과학관·시민청 등에도 각 시설의 이용 제한 대상을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통일 규정토록, 해당 조례들의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	입장 및 이용 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 술에 취한 자 등 →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이용의 금지)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제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용대상자)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붙임 1〉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연 번	인 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항		
		총 계		96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우범지역	→	취약계층·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댁’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2	편견·선입견에 근거 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3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5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7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필요	

〈붙임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이용료) ① 전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